

제 호

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서

1. 성명(대표자) : (생년월일:)
2. 진흥시설 소재지 :
4. 진흥시설 규모 :
5. 건축서비스사업자 수 :

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 제16조제1항 및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